

한경협 ESG Bulletin

2026. 7 | 제 28 호

K-ESG 얼라이언스 사무국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한경협 ESG경영자문단이 ESG 핵심 이슈에 대해 꼭 짚어 설명드리는 'ESG Bulletin'을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ESG 법정공시 시대를 맞이하는 기업 담당자의 리스크와 과제

"ESG 공시 의무화, 우리 기업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박상오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1. 자율공시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지난 7월 8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ESG 공시는 거래소 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곧바로 사업보고서 내 공시, 즉 법정공시로 시행되며,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공시 대상기업도 20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 5조 원 이상까지 공시 의무가 확대되고, 2030년에는 2조 원 이상까지 확대가 검토된다. 기존에 논의되던 내용과 비교하면 공시 대상, 공시 채널, 인증 세 축 모두에서 뚜렷하게 강화된 것이다.

이 변화의 본질은 ESG 공시 문서의 성격 전환에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국내 기업이 발간해 온 GRI 기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ESG 비전 및 현황을 듣기 좋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것"이었다면, 법정공시 이후의 ESG 공시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채널 및 시점(3월말 사업보고서)으로 공시하면서 "투자자에게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ESG 현황 및 계획을 제시하고 평가받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보고서 양식뿐만 아니라, 데이터 산정 방식부터 컴플라이언스 등 내부통제, 문서화 관행까지 기업 운영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중심의 '설명과 공유'에서 투자자 중심의 '검증과 평가'로

데이터 산정 방식,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문서화 관행까지 기업 운영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

공시 의무 확대 일정



제3자 인증 의무화



2030년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 예정

리걸 리스크 진단

ESG 정보가 법정공시(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되는 순간, 허위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 등 행정제재, 나아가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경감 포인트 (ESG 공시 최종안 기준)

도입 초기 3년간 (한시적 면제)

- ✓ 고의적 그린워싱을 제외하면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 한시적 면제
- ✓ 사례 분석 등 적응 기간으로 활용

3년 이후 (Safe Harbor)

- ✓ 예측, 추정정보 및 제3자 수집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정·주의 문구 등을 갖춘 성실한 기재에 한해 면책
- ✓ 합리적 근거·판단 + 주의 문구 + 문서화 필수



2.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 리걸 리스크 진단

ESG 정보가 법정공시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되는 순간, 허위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 등 행정제재, 나아가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즉, 가장 경계할 부분은 법정공시에 따른 강화된 의무와 책임이다. 문제는 ESG 정보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예측정보, 추정치,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변수가 많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작성한 공시도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틀린 공시"가 될 수 있고 이는 원치 않던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업 실무자는 법정공시에 따라 책임이 발생 또는 가중되는 지점을 주목해야 한다. 해당 지점에 공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친환경 제품 등의 '그린워싱(GreenWashing)'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던 여러 기준(진실성, 명확성, 상당성, 실증성, 전과정성, 구체성, 완전성 등) 역시 리스크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ESG 공시 최종안은 ESG 정보의 특성과 국내 기업의 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면책제도를 설계하였으므로, 기업으로서는 도입 초기에 이러한 면책제도를 리스크 경감을 위한 완충장치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ESG 공시 최종안에 따라 도입 초기 3년간은 고의적인 그린워싱을 제외하면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그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이를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적응 기간으로 활용하면서도 '허위 또는 중요한 정보 누락'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공시(즉, 고의적인 그린워싱)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공시의 기초가 된 데이터 및 그 표시(=공시)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 및 판단이 존재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위 한시적 면제기간 이후에는 예측·추정정보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 수집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정에 기초한 성실한 기재, 주의문구 등을 갖춘 경우에만 면책하는 제도(safe harbor)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업으로서는 (i) ESG 정보를 범주별로 구분한 후 (ii) 정보의 범주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검증, 합리성에 대한 충실한 판단, 주의문구 기재 등의 절차 준수 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iii) 면책조항 적용을 위해서는 기업이 그 요건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문서와 데이터를 통해 해당 공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만 한다.

3. 실무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할 것인가 — 법정공시 대응의 키 포인트

ESG 공시가 시장의 예상보다 급속도로 또한 광범위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신속한' 준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이라면 이미 모의공시(dry-run)를 준비할 단계이고, 준비 착수 시점(2027년)을 앞둔 5조원 이상 기업도 올해 하반기에 진단 단계를 시작해야 여유 있는 이행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다섯 가지가 대응의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공시 대응의 키 포인트



ESG 공시 최종안의 한시적 면책은 '준비하는 기업'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재무·법무·경영진·이사회가 함께 지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신뢰받는 ESG 공시 실현"

첫째, 공시 거버넌스다. 기업 내 공시와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 부서 간 데이터 관리 체계 등을 ESG 공시 시대에 맞추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갭(Gap) 분석이다. 기존 자율공시에 따른 보고서를 공시기준(KSSB)에 맞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 위험·기회의 재무영향 정량화, 시나리오 분석, 연결기준 공시는 큰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셋째, 데이터 내부통제다. 공시에 요구되는 ESG 정보는 기존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산정·취합되어야 하고, 통합적으로 관리·분석되어야 한다. 이는 제3자 인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준비이다. 넷째, 모의공시와 문서화다. 공시 초안을 실제로 작성해 보면 판단·추정의 근거와 가정이 면책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을 사전 점검할 수 있다. 다섯째,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전사적 차원에서 교육 등을 통해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지 않으면 공시에 포함되는 데이터, 보고서 기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SG 공시 최종안의 한시적 면책 등은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이지만, 그 시간은 준비하는 기업에게만 의미가 있다. ESG 공시의 무게는 이제 담당 부서 혼자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무와 법무, 경영진과 이사회가 함께 지는 구조를 올해 하반기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